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결과(2021.9.10.)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구비요건의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서 구비서류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함
(안 제3조 제1항)

제1항을 삭제하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를 신설함

제1호 중 “해당구역 안에서” 를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로 하고,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기존 4호를 2호로 하고, 3호에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를 신설함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안 제3조 제3항)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를 신설함

다.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 이내” 에서 “9명 이내” 로 변경함(안 제9조).

라. 별지 제1호[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와 제2호[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전통시장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화 : 02-3396-5066, 팩스 : 02-3396-8679, email : hrkim80@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중 “해당구역 안에서” 를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로 하고, 제1항 조문 및 제2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한 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제3항을 조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 이내” 에서 “9명 이내” 로 한다.

별지 제1호와 제2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를 각각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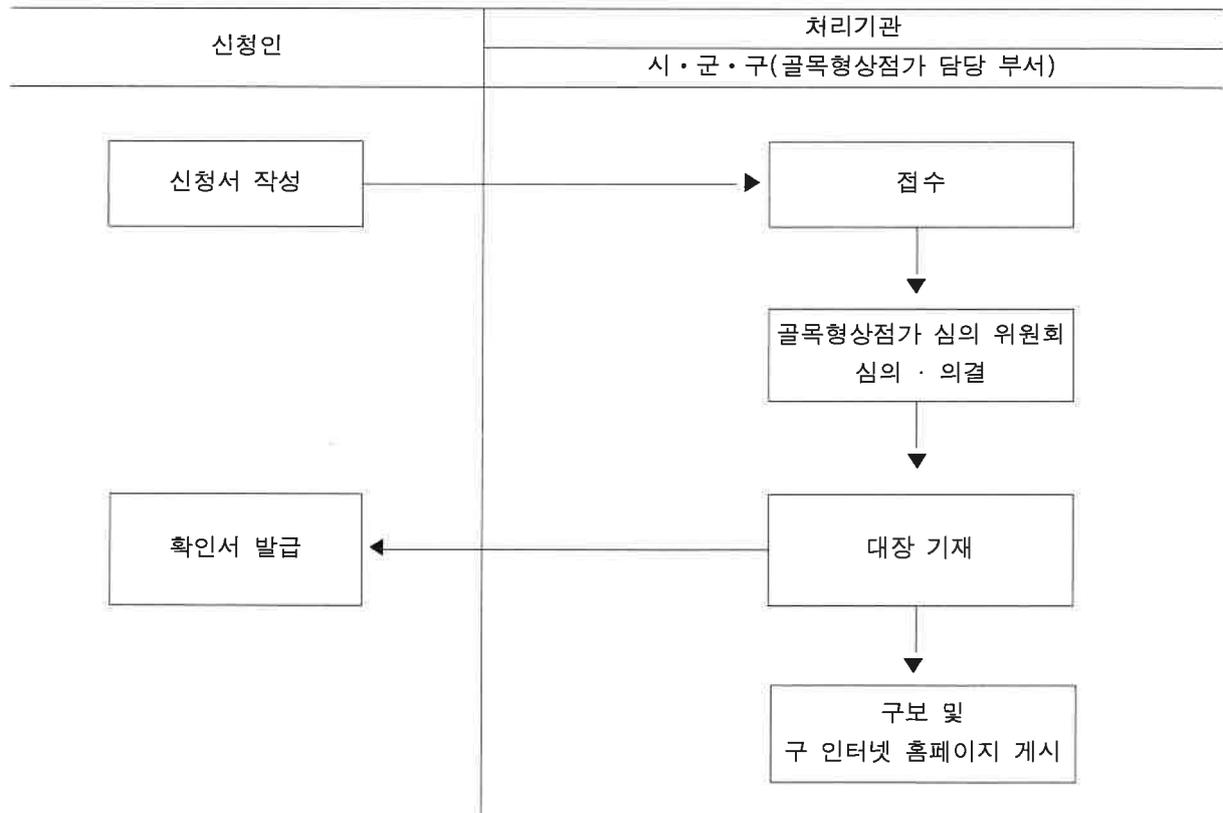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명 칭 :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삭 제)</p> <p>1. <u>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u></p> <p>2. <u>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삭 제)</u></p> <p>3. <u>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삭 제)</u></p> <p>4. <u>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u></p> <p>② (생 략)</p> <p>③ <u>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u></p>	<p>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u>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u></p> <p>1. <u>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u> -----</p> <p>2. <u>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u></p> <p>3. <u>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u></p> <p>4. <u>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u></p>

현행	개정안
<p>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p><u>(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p>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u>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골목형상 점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삭제)</u> 2. <u>(삭제)</u> 3. <u>(삭제)</u>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1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9명 이내</u>의 ----- --.</p>
<p><u><신설></u></p>	<p><u>별지 제1호 서식</u> <u>별지 제2호 서식</u></p>